

IFRS Brief

IFRS Newsletter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6년 3 · 4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1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6

I.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Global 동향 7

I. 2016년 1월,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6년 1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16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경과규정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회(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서 개정] IAS 12 법인세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Amendments to IAS 12)"

배경

IFRS 해석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IAS 12에 부합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기위해 IAS 12 '법인세'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Fact Pattern〉

IAS 39에 의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자산의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하였고, 기업은 그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보유할 능력과 의도가 있다. 발행자는 계약상 지급액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채무상품의 세무기준액은 원가이고, 채무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이 세무상 실현되기 전까지 세무상 그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은 자본손익과 영업손익을 구분하고, 세법상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에서만 상계되지만, 영업손실은 자본이익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상계 가능하다.

기업에는 과세소득 이외에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없다.

주요내용

- 문단 26(d)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명확히 함

상기 언급된 상황에서 기업은 발생한 평가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동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할 능력과 의도가 있고, 발행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모두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평가손실은 세무상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 보다 낮더라도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IASB는 IAS 12의 일시적차이의 정의를 고려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존재는 오로지 보고기간 말의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서만 발생하고, 장부금액의 미래변동가능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세무기준액이 원가이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자산의 채무상환의 장부가액이 원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공정가치가 하락한 고정자산의 채무상환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를 추가하였다.

• **문단 27A : 세법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을 구분하는 경우 해당 세법의 규정을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함**

IAS 12 문단 27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 영업손익과 자본손익을 구분하여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자본이익에서만 상계하고,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에서만 상계하도록 구분하는 규정과 같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을 구분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평가 할 때에는 세법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과세소득을 구분하는 규정이 있는지 고려하고,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세법에 따라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그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과세소득을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된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각각의 구분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문단 29(a)(i) : 미래 과세소득 추정 시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소득 감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함**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할 때 현재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두 번 차감되는 결과를 방지하였다.

• **문단 29A : 미래 과세소득 추정 시 장부금액 이상으로 회수될 자산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자산이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하도록 명시하였다.

• **문단 98G : 경과규정**

개정된 기준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개정된 기준서의 내용은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미 많은 기업이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서 상 반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영업손익과 자본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된 문단 27A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된 법인세 기준으로 인하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서 제정] IFRS 16 “리스” 공표

장기간의 논의 끝에 2016년 1월 IASB는 새 리스기준서인 IFRS 16을 발표하였다.¹ 새 리스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리스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해 온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ASB는 새 리스기준서가 모든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관련 리스자산/부채를 표시하도록 하여 재무상태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 주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

기존 리스기준서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모두가 리스계약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 리스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의 회계 처리는 변경 시의 효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IAS 17의 규정을 유지한 반면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 계약을 기존의 금융리스처럼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 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중심으로 소개한다.

리스의 정의

리스의 정의는 어떤 계약이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된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주는 계약이다. 리스 계약이라면 리스이용자는 이러한 리스계약으로 “경제적 효익”과 “식별된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새 리스기준서는 “식별된 자산”은 무엇인지와 “경제적 효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 간편법

또한 리스이용자의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리스 회계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시하고 있다.

- 단기 리스: 12개월 이내
- 저가 리스 계약(예: USD 5000 이하 계약(IFRS 16.BC100))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리스계약기간에 걸쳐 정액법 등 그 밖의 체계적인 기준으로 관련 리스비용을 인식한다.

그 밖에 사용을 지시할 권리에 대한 제약이 방어권에 해당하는 경우나 리스와 리스가 아닌 요소가 계약에 함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서 기업이 판단해야 할 사항들에 유의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모든 리스계약에는 부채를 차입하는 재무활동적인 요소와 리스자산을 사용하는 영업활동적인 요소가 혼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리스이용자는 재무활동에 대해 리스부채와

¹ IASB는 FASB와 오랫동안 논의를 했지만 두 리스기준서를 일치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영업활동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손상)를 인식하도록 한다. IAS 17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매기 정액의 리스비용이 영업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새 리스기준서에서는 초기에 리스부채의 잔액이 크므로 초기 이자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 |
|--------------|---|
| | 리스부채는 리스료와 리스기간 종료 시의 예상지출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따라서 리스기간, 지급조건, 할인율에 따라 리스부채의 금액이 결정된다. |
| 리스기간 | 리스기간은 주로 리스이용자에게 연장옵션 등이 있는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기간을 리스기간으로 본다. 리스기간은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기간에 판단사항이 있는 경우 판단 근거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
| 지급조건 | 리스료는 ①사실상의 고정리스료, ②각종 지수나 이자율에 연동된 변동리스료, ③그 밖의 변동리스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IFRS 16에서 사실상의 고정리스료와 각종 지수나 이자율에 연동된 변동리스료만을 리스료에 포함하고 있다. 그 밖의 변동 리스료는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결과 사용권자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할인율 | 리스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내재이자율 ² 로 결정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
|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 |
| | 사용권자산은 위에서 산정된 리스부채를 기초로 산정된다. 리스부채에 직접원가, 복구 추정원가 등을 가산하여 측정한다 ³ . |
|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 |
| | 리스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공정가치 측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변동이자에 근거한 리스료 변동, 리스계약 조건의 변동, 구매옵션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평가 변동 등이 있는 경우 할인율을 조정한다. |

²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 원가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³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기준서와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권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를 측정함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

일반적으로 사용권자산은 원가법으로 측정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리스 부채를 재조정하는 경우 사용권자산도 재조정한다.

- 이미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0' 이하인 경우 또는
- 각종 지수나 이자율에 기초하지 않은 변동리스료와 관련된 리스부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다른 투자부동산의 회계정책에 따른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즉,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 리스이용자가 유형자산에 재평가법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구분의 사용권자산에 대해 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은 IAS 16에 따르며, 손상은 IAS 36의 손상 규정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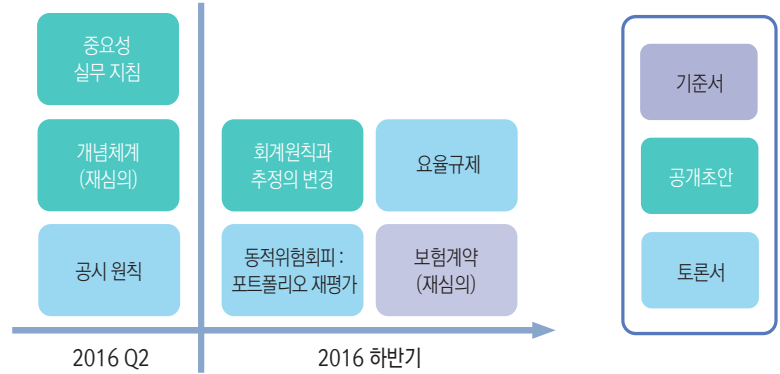
시행일과 경과규정

IFRS 16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IFRS 15를 적용한다면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경과규정이 리스의 정의, 리스이용자, 리스제공자, 전대리스, 판매후리스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와 기타 기준서 개정작업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1, 2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6년 1월에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IFRS 15의 명확화'의 최종 개정을 논의하였다.

- 경과규정
- 시행일

경과규정

IASB는 경과규정에 대한 기존의 결정사항들을 확인하였다.

- 기업은 IFRS 15의 명확화된 개정사항들을 소급적으로 적용함, 그리고
- 최초 도입시에 요구되는 특별한 경과규정은 없음.

시행일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IFRS 15의 명확화'가 적용됨
- 명확화된 개정사항은 조기적용이 허용됨

향후일정

IASB는 2016년 3월에 'IFRS 15의 명확화'가 공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 2016년 1월,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6년 1월, 2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 - 통합의 정도

IASB는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의 인식단위를 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집합으로, 즉 계약 집합의 용역 마진이 음(-)인 경우에만 손실을 인식하기로 하고 계약의 집합은 최초에 다음의 계약을 포함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금액과 시기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위험의 주요 요소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업이 기대하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 계약
- 유사한 기대수익을 가지고 있는 계약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계약상 용역 마진을 배분하는 목적은 제공되는 용역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기간 종료 후에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이 더 이상 없다면, 계약에 대한 계약상 용역 마진은 해당 기간에 손익으로 모두 인식되어야 한다. (a)
- 기업은 집합에 대한 계약상 용역 마진의 배분이 (a)의 목적을 충족시킨다면 계약상 용역 마진을 배분하기 위해 계약들을 통합할 수 있다.
-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집합이 (a)의 목적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계약의 집합이 다음과 같다.

- ✓ 금액과 시기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주요 요소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업이 기대하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 계약
- ✓ 유사한 기대수익을 가지고 있는 계약

-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잔여 계약의 기대되는 기간과 규모를 반영하여 기간에 대한 집합의 계약상 용역 마진 배분을 기업이 조정한다.

IASB는 규제기관이 보험계약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손실부담계약의 통합 수준 혹은 계약상 용역 마진의 배분에 대한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규제의 결과일지라도, 수익성이 유사하지 않은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을 결정할 때와 계약상 용역 마진을 배분할 때 포함될 수 없다.

일반 모형에서 재량배당의 영향 명시

IASB는 계약의 초기에 기업이 계약에서 재량배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시장 변수의 변동과 재량배당의 변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기업이 보험계약자 때문에 향후 발생할 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현재 시장수익률을 benchmark로 사용해야 한다.

2. 할인율 프로젝트

IASB는 여러 기준서에서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요구 및 허용되는 할인율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과거 “2011 Agenda Consultation”을 통해 서로 다른 할인율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일부에서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응하여 IASB는 차이의 이유 및 IASB가 다루어야 하는 타당하지 않은 비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FRS의 할인율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IASB는 1월의 Education Session에서 할인율의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 ✓ 법인세와 관련하여 현재가치 측정방법론의 논의
- ✓ 현재가치 측정의 표시와 공시
- ✓ 현재가치 측정의 목적과 할인율 차이의 설명
- ✓ IFRS에서 현재가치 측정의 범위

Staff은 재무보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 ✓ 현재가치 측정에 법인세를 반영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여러 이슈가 발견되었음
- ✓ 현재가치 측정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의 비일관된 사용은 상호비교를 어렵게 함
- ✓ 비일관된 공시요구사항은 상호비교를 방해함
- ✓ 각각의 기준서에서 측정의 목적이 불명확함
- ✓ 이연법인세자산을 할인하지 않는 것은 비교가능성을 저해함

향후 미팅에서 Staff은 다음 단계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전시켜 IASB에 논의할 것이며, IASB는 할인율과 법인세간의 상호영향과 같은 특정 Topic들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다.

3. Goodwill and Impairment

IASB는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 중 IFRS 3 ‘사업결합’의 post-implement review프로젝트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 ✓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
- ✓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손상만 고려하는 접근방법과 상각과 손상을 같이 고려하는 접근방법)
- ✓ IAS 36의 비유동자산, 비금융자산 및 영업권에 대한 손상요건의 개선

IASB는 향후 미팅에서 이를 더 논의하고, FASB와의 논의 전에 필요한 절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4. IFRS Implementation Issues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측정 해석위원회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 대여금 등의 순투자를 측정할 때 지분법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해 왔으며, 해석위원회의 요청으로 IASB가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FRS 9 문단 2.1(a)의 적용범위 제외 규정이 다음의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범위 제외규정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만 적용된다.
- 장기투자지분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IFRS 9과 IAS 28는 어떻게 상호 작용되는지

- 손상 규정을 포함한 인식과 측정에 IFRS 9의 규정을 적용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을 배분할 때, 장기투자지분(IFRS 9으로 결정)의 장부가액을 손실이 배분되는 순투자의 일부로 포함함
- IAS 28의 문단 40과 41A~43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투자의 손상을 측정함

부채의 분류

IASB는 보고기간 종료일 후에 대출약정의 조건을 검사하는 경우 공개초안 “부채의 분류(IAS 1의 개정 제안)”를 어떻게 적용할 지를 논의했다.*

IA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대출약정의 조건을 준수했는지는 보고서일에 평가되어야 한다.
- 대출약정의 조건을 준수했는지를 보고기간 종료일 후의 날에 검사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의 준수 여부로 분류 규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보고기간 종료일에 대출약정의 조건에 부합되는지는 그 조건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한다(공개초안 문단 BC4에 기술).
- 약정에 대출자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기적인 검토 조항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토일까지만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 “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존재하는 권리에 기초하고 대출약정의 조건 준수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평가된다”는 IASB의 제안은 주기적인 검토 조항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회의에서는 제기된 사례들을 이용하여 “결제의 수단으로써의 지분 양도”에 대한 지침을 분석할 예정이다.

* 대출약정의 연장 또는 중단에 대한 조건(Debt covenant)을 약정상 보고기간 종료일 후에 검사하는 조건인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의 이 조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 유동성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II. 2016년 1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6년 1월의 IFRS 해석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중인 IFRS 개정사항 관련 논의

(1) [IAS 32] - 금융상품 :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의 분류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발행한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의 분류와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선불카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만기가 존재하지 않음
- 현금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
- 계약조건에 따라 선택된 업체의 상품이나 용역으로만 교환가능
- 선불카드 보유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선불카드 잔액은 변하지 않음
- 고객충성제도의 일환으로 발행되지 않음

9월 회의에서 해석위원회는 선불카드에 대한 기업의 부채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논의했다. 상기와 같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발행 기업이 선불카드 보유자가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업체에게 현금을 전달할 계약상 의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상환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더라도, 선불카드 보유자가 상환을 요청했을 때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의무는 금융부채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카드를 발행한 기업은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언제 제거할 지를 결정할 때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2015년 9월 회의에서 IAS 32의 입장에서 해석서 또는 기준서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staff은 잠정적인 결론에 대해 수령한 의견에 대한 분석을 설명했다. 해석위원회의 다수의 위원들은 질문서에 포함된 상황으로 이슈의 범위를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해석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해당 상황에서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서를 확정하기 위해서 IFRS 15와 IFRS 9간의 관계를 고려
- 해당 거래에 IFRS 9(IAS 39)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IAS 8과의 관계를 고려

해석위원회는 staff에게 과거 논의를 요약하고 이러한 선불카드 회계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기준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요청했다.

2. IFRS IC Agenda decisions

2016년 1월 해석위원회의 meeting에서 결정된 Tentative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IFRIC 12] - 자산 취득에 대한 변동 대가와 민간투자사업 약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해석위원회는 IFRIC 1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약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상 금액의 회계처리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을 고려하였다.

- 민간투자사업과 분리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업시행자는 분리되는 재화와 용역을 관련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함.
- 사회기반시설과 분리되는 유형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임. 만약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부분은 리스기준서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 또는 분리되는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회계처리가 아래와 같이 결정될 것임.
 - ✓ 민간투자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만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면(즉, IFRIC 12의 금융자산 모형의 적용), 사업허가자는 일반적인 고객에 해당함. 그러므로 계약상 지급액은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70~72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함.
 - ✓ 민간투자사업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만 있다면(즉, IFRIC 12의 무형자산 모형의 적용), 사업시행자가 건설/개량 용역 및 사업허가자에 대한 계약상금액의 대가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함. 그러므로 계약상 지급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에 해당함.
 - ✓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와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할 계약적 권리를 모두 갖고 있다면, 기업은 민간투자사업의 무형자산 또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중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상 지급액의 실질을 고려해야 함.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에 대해 자산 취득시의 변동대가 이슈와 연관되어 의견을 제시하기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 안건을 Agenda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2) [IFRS 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제한 여부

해석위원회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측정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장부금액 이하로 손상차손을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 받았다.

비화폐성자산의 손상을 다루는 IAS 36과 매각예정자산의 손상을 다루는 IFRS 5는 공통된 요구 사항이 있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일부 문단은 이 중 한 기준서에만 기술되어 있어 이를 준용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IFRS 5의 문단 23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인식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IAS 36의 문단 104와 문단 122에 따라 손상의 배분순서가 IFRS 5의 범위 내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IAS 36의 문단 105인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순공정

가치,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IFRS 5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IAS 36의 문단 105는 IFRS 5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5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인식할 때 손상차손의 배분 제한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나 기준서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이슈를 Agenda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내부거래의 표시 및 공시

해석위원회는 회사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의 사이의 내부거래에 대해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내용은 IFRS 5의 문단 30은 회사가 재무제표 사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 및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비하여, IFRS 5에 계속영업과 중단영업간의 내부거래 제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중단영업 표시와 관련하여 IFRS 5와 IAS 1에 IFRS 10의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FRS 10 문단B86(C)은 단순히 내부이익이 아니라 내부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 및 기타 제거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중단영업과 계속영업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IFRS 10의 내부거래 제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문단30에서 재무제표 사용자가 중단영업과 처분활동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 및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단영업의 재무효과를 재무제표 사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시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5가 2015년 8월에 IASB에서 발표한 [Request for Views on the 2015 Agenda Consultation]의 연구과제 후보 중 하나임에 주목했다. 계속영업과 중단영업간의 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제표의 결과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이 프로젝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항을 Agenda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다양한 이슈

범위

매각예정 분류의 범위 - IFRS 5의 현행 요구사항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각거래를 통해 장부금액 회수가 예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거래의 형식과는 상관없이(폐기 제외) 기업이 비유동자산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 - IFRS 5의 문단5는 IFRS 5의 측정기준이 IFRS 9의 금융상품의 범위 내 금융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이슈는 금융상품이 주로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처분자산집단에 IFRS 5가 적용되는지와 관련된다.

측정

처분자산집단의 손상 - 처분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즉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의 차액이 처분자산 집단 내에서 IFRS 5의 측정 규정에 해당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손상 금액이 이를 배분할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이슈이다.

처분자산집단내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환입 -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후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 내에 포함된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과 관련되어 있다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표시

중단영업의 표시에서의 '주요 사업계열'의 정의 - IFRS 5의 문단 32에서 기술하고 있는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의 개념과 관련해서 '중단영업'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매각계획 변경시 소급적용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 IFRS 5의 문단28은 처분자산집단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인 경우 재측정효과를 소급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종속 기업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당기에 인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종속기업과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이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종속기업과 그 밖의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조정금액을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하는지, 조정이 측정뿐만 아니라 공시에도 적용되는지 이슈이다.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의 수와 다양성 때문에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넓은 범위의 프로젝트가 필요 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IFRS 5는 2015년 8월에 IASB에서 발표한 Request for Views on the 2015 Agenda Consultation의 연구과제 후보에 포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이슈를 이번 Agenda에 추가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3) [IFRS 9] 금융상품 - 전환시 헷지관련 이슈

해석위원회는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하는 경우 위험회피 지정과 위험회피회계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지침을 요청 받았다.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청 받았다.

- 위험관리 목적과 위험회피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체 비금융항목(IAS 39에서 허용)에서 비금융 항목의 요소(IFRS 9에서 허용)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변경하였다면 IAS 39에서 IFRS 9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Issue 1)
-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이 비금융항목의 요소만을 위험회피하는 것인 경우 기업이 전체 비금융항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Issue 2)

Issue 1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IFRS 9으로 전환 시에 전체 비금융항목에서 비금융 항목의 요소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IFRS 9.7.2.22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속하면서 위험회피대상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IFRS 9.7.2.25에서 기술하고 있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는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Issue 1에 논의된 사례는 IFRS 9.7.2.26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위험회피관계는 IFRS 9의 전환 시에 지속되는 위험회피관계로 처리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Issue 2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 IFRS 9.BC6.97, BC6.98과 BC6.100은 위험회피의 지정이 관리되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고 위험관리 목적에 사용되는 상품과 동일한 종류에 해당한다면, 실제 위험관리를 동일하게 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proxy hedging)을 지지한다.
- 기업의 위험관리를 반영하는 proxy hedging을 사용하는 것이 IFRS 9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IFRS 9 전환 시에 전체 비금융항목을 위험회피로 계속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IFRS 요구사항을 고려했을 때,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나 기준서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 [IFRS 11] 공동약정 -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의 재측정

해석위원회는 아래 거래와 관련된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이 IFRS 3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을 다음 거래로 인해 재측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 해당 거래를 하기 전에 공동영업을 공동지배했거나 공동영업의 당사자였으며 거래로 그 공동영업의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경우(공동영업의 당사자가 해당 거래를 하기 전에 공동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했음)

해석위원회는 IFRS 3의 문단 2(2)가 자산(또는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 취득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 규정은 자산 취득 회계처리는 원가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처리가 유의적인 실무상 다양성이 없으므로 이 이슈를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 [IAS 39] 금융상품 : 마이너스 금리상황에서 인식과 측정

해석위원회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의 IAS 39의 인식과 측정의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의 적용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였다.

- IAS 39의 문단 AG33(b)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주계약이 변동이자율 채무상품에 내재된 이자율 floor에 적용되는지 여부
- 위 문단을 참조할 때 '시장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

해석위원회는 다음을 주목하였다.

- IAS 39의 문단 AG33(b)이 일반적인 금리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이자율 상황에서 이자율 floor 가 적용된다.
- IAS 39의 문단 AG33(b)를 적용할 때, (+) 혹은 (-)이자율 상황에서 복합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자율 floor(즉, 그 계약에 참조되는 벤치마크 이자율과 계약상 스프레드, 그리고 적용가능한 유효이자율의 계산과 관련되는 프리미엄, 할인을 또는 다른 요소)를 이자율 floor가 없는(즉 주계약) 유사한 계약에 대한 시장이자율과 비교하여야 한다.
- 주계약에 대한 적절한 시장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계약 및 관련 스프레드의 특정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주목하였다.

- IAS 39의 문단 AB33(b)는 (+)와(-) 이자율을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문단의 요구사항은 두가지 케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IAS 39의 문단 AB33(b)는 내재된 이자율 floor가 주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식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내재된 이자율 floor의 개별요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시장이자율'의 용어는 IFRS 13 공정가치에 정의된 공정가치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고, IAS 39의 문단 AG64에도 '유사한 신용등급의 유사한 상품(통화, 조건, 이자율의 형태 및 다른 요소)에 대한' 이자율로 표현되어 있다.

해석위원회는 또한 IFRS 9 에 문단 B4.3.8(b)와 B5.1.10이 IAS 39의 문단 AG33(b)와 AG64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안건의 결론은 IFRS 9의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

현행 IFRS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석이나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Agenda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49〉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경과규정

배경

2014년 5월 IASB는 새 수익기준서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발표하였으며, KASB에서도 2016년 2월에 이를 공표하여 한국에서도 이제 새 수익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수익기준서는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절차 및 시스템에 유의적인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기준서를 공표한 후부터 이 기준서의 적용을 돕기 위해 수익 인식 관련 Transition Resource Group (TRG)을 구성하여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IFRS 15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했으며, 이에 따라 IASB는 2015년 7월에 'IFRS 15의 명확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새 기준서가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IASB는 시행일을 1년 연기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IASB는 IFRS 15의 최초 적용 시 소급 적용이 수익의 추세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IFRS 15에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IFRS 15의 적용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어떠한 경과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요

IFRS 15의 경과규정은 크게 소급법(the retrospective method)과 누적효과법(the cumulative effect method)으로 구분된다. 이에 더해 비교가능성이 높고 추세를 볼 수 있다는 소급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적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소급법에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다음 그림은 2018년 1월 1일이 최초 적용일인 경우, 각 대안별로 2017년 재무제표에의 영향을 보여 준다.

| 대안 | 2017년 | 2018년 | 자본의 조정일 |
|-------|------------|------------------------|-------------|
| 완전소급법 | IFRS 15 적용 | IFRS 15 적용 | 2017년 1월 1일 |
| 부분소급법 | 여러방법 선택(1) | IFRS 15 적용 | 2017년 1월 1일 |
| 누적효과법 | 기존 규정 | IFRS 15 적용 기존 규정(2) | 2018년 1월 1일 |

- (1) IFRS 15에 따라 계약이 재작성되는 부분과 기존규정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혼합되어 있음
- (2)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① IFRS 15를 적용함에 따라 당기의 재무제표 항목별로 영향 받은 금액과 ② IFRS 15와 현행 기준서의 보고된 결과간의 유의적인 변경에 대한 설명의 공시가 요구됨

완전 소급법에서는 2017년 1월 1일 개시재무제표에 누적효과가 모두 조정되어 비교표시되는 2017년 재무제표에는 IFRS 15가 완전하게 적용 된다.

부분 소급법(실무적 간편법)에서는 2017년 재무제표에는 IFRS 15가 적용되지만, 2017년에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하나 이상 사용할 수 있다.

- (1) 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여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예시 1)**⁴.
- (2) 완료된 계약의 대가에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교 보고기간의 변동대가를 추정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된 날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예시 2)**.
- (3)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모든 보고기간에 대하여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 가격과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문단 120 참조)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예시 3)**.

마지막으로 비교 표시되는 2017년에는 기존 수익기준서를 적용하고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에 반영하는 **누적효과법**이 있다. 기업이 누적효과법을 선택한다면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보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모두 추가 공시해야 한다.

예시

다음은 부분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각 실무적 간편법의 예시이다.

(예시1) 실무적 간편법 1 - 같은 연도에 개시 및 완료된 계약

실무적 간편법 1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 완료된 계약, 즉 최초적용일 이전에 유효한 수익 기준서에 따라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계약의 경우, 동일 회계기간 내에 개시 및 완료되었다면 이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실무적 간편법 1

제조업체 X사는 고객과 각각 8개월 동안 유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계약 | 개시 | 완료 |
|----|-------------|--------------|
| 1 | 2017년 1월 1일 | 2017년 8월 31일 |
| 2 | 2016년 5월 1일 | 2017년 2월 28일 |
| 3 | 2017년 5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⁴ 실무적 간편법의 각각의 적용 방법을 별도의 문단에서 예시를 제시하였음

계약의 기간



X사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계약 1에 적용. 계약 1은 최초적용일 이전의 보고기간 중 개시 및 완료됨
- 계약 2에 적용하지 않음. 계약 2의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지만, 단일 보고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음
- 계약 3에 적용하지 않음. 계약 3이 최초적용일 이전에 현행 기준 하에서 완료되지 않음

(예시2) 실무적 간편법 2 - 변동대가 규정의 적용 면제

실무적 간편법 2에 따르면, 기업은 각 비교표시기간에 변동대가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된 날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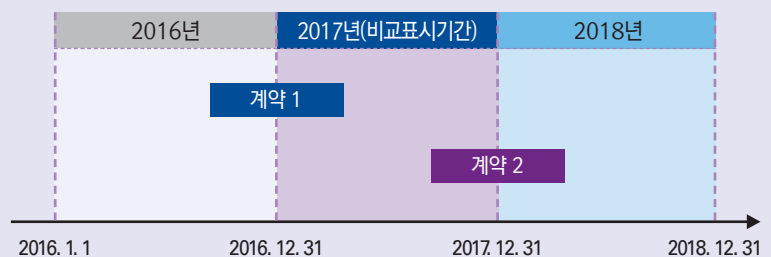
실무적 간편법 2

제조업체 X사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 개시 | 반품기간의 종료 | 설명 |
|----|--------------|--------------|--------------------------|
| 1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2월 28일 | Y사에 1,000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 |
| 2 | 2017년 12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Z사에게 2,000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 |

X사는 고객 Y사와 Z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3개월 내에 반품할 권리를 부여한다. Y사는 2017년 2월에 200개의 제품을, Z사는 2018년 2월 300개 제품을 반품했다.

계약의 기간



X사는 실무적 간편법 2의 적용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계약 1에 최종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최초적용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반품에 따른 변동대가를 추정하지 않고, 800개(1,000개를 인도하였으나, 200개를 반품)의 제품에 대한 수익을 2016년의 수익으로 인식
- 계약 2에는 변동대가 회수에 대한 확신 정도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함. 최초적용일 이전에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불가

(예시3) 실무적 간편법 3 - 공시사항 면제

실무적 간편법 3을 적용하면, 최초적용일 이전의 모든 비교표시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잔여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금액
- 예상 수익금액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

실무적 간편법 3

부동산개발사인 X사는 고객 C사와 2천만 of 고정된 금액에 C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2016년 1월 1일에 개시하며, 5년 내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X사는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수행의무를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였으며, 원가대 원가법이 진행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판단한다. (K-IFRS 1115.120)

만약 X사가 실무적 간편법 3을 포함한 소급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2018년 12월 31일자 연차재무제표는 비교표시기간(2017년 12월 31일) 동안의 잔여수행의무 공시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건물은 2018년 12월 31일에 80%가 완공된다고 가정한다.

공시사항 예시

잔여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2018년 12월 31일, 건설공사에 대한 거래금액 2천만 중 4백만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 금액은 계획된 건설공사 완료 일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고르게 이 금액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다.

K-IFRS 1115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잔여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였다.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S.Manager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정은 S.Manager

T. (02)2112-0495

E. jkim17@kr.kpmg.com

한지명 S.Manager

T. (02)2112-7928

E. jimyunghan@kr.kpmg.com

박동원 Manager

T. (02)2112-3264

E. dongwonpark@kr.kpmg.com

양유정 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kpmg.com/kr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